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0- 111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박수자, 이흥희, 이재운,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김종두 의원

1. 제안이유

-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산림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함(안 제3조)
- 다.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임업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이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나. 체험행사
 -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 관련조문 :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 비용(a - b)	630	700	700	700	700	3,430	
세출	국비	1,625	1,700	1,700	1,700	1,700	8,425
	도비	165	200	200	200	200	965
	군비	630	700	700	700	700	3,430
	소계(a)	2,420	2,600	2,600	2,600	2,600	12,820
세입	국비	1,625	1,700	1,700	1,700	1,700	8,425
	도비	165	200	200	200	200	965
	소계(b)	1,790	1,900	1,900	1,900	1,900	9,390

3. 관련 의견

-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1년 기준)

-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 2,165백만원
- 산양삼, 두릅, 고로쇠 등 산림소득 지원사업 : 172백만원
- 임업 관련 연찬회, 교육, 행사 지원 : 83백만원